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430

발의연월일: 2021. 11. 19.

발 의 자:김도읍 • 권은희 •김태흠

태영호 · 정동만 · 권영세

조명희 · 추경호 · 양금희

조수진 · 윤창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유족의 연령을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, 손자녀는 19세 미만 으로 차등을 두고 있음.

손자녀가 19세가 되었을 때 학업을 비롯한 기타 취업 등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렵다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유족의 생활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손자녀의 유족보상금 수급자격 연령을 자녀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따라서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19세까지에서 25 세까지로 상향하여 산업재해근로자 및 그 유족의 보호를 두텁게 보호 하고자 함(안 제63조 및 제64조).

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1항제2호의2 중 "19세"를 "25세"로 한다.

제64조제1항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

4의3.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63조(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제63조(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의 범위) ① 유족보상연금을 의 범위) ① -----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 람(이하 "유족보상연금 수급자 격자"라 한다)은 근로자가 사 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(그 근로 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 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 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 한다)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.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----<u>25세</u>-2의2.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3. • 4. (생략) 3. • 4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생 략) ②·③ (현행과 같음) 제64조(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| 제64조(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) 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) ①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는 다.

1. ~ 4. (생 략)

4의2.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

<u><신 설></u>

5. ~ 7. (생 략)

②・③ (생 략)

①
1. ~ 4. (현행과 같음)
4의2.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

4의3.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5. ~ 7. (현행과 같음) ②・③ (현행과 같음)